

현장실습 운영 변경 사항

- 1) 실습학기제 용어 변경(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/ 교육부, 2020.10.14.)  
 - 현장실습 개념의 명확화, 체계화를 통해 표준화·고도화된 현장실습 확산  
 ⇒ 현장실습학기제를 ‘표준 현장실습학기제’와 ‘자율 현장실습학기제’로 구분  
 ※ 공시대상: 표준 현장실습학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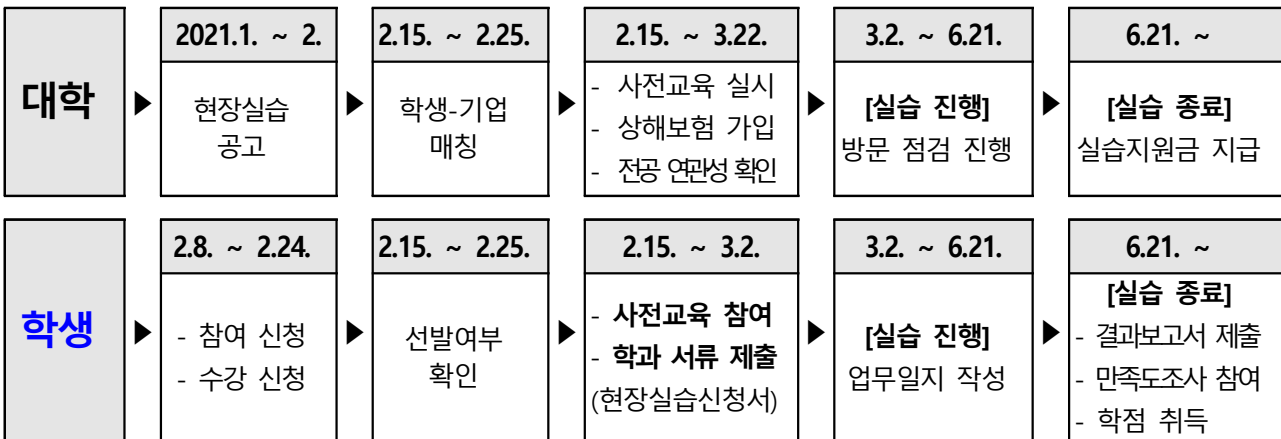
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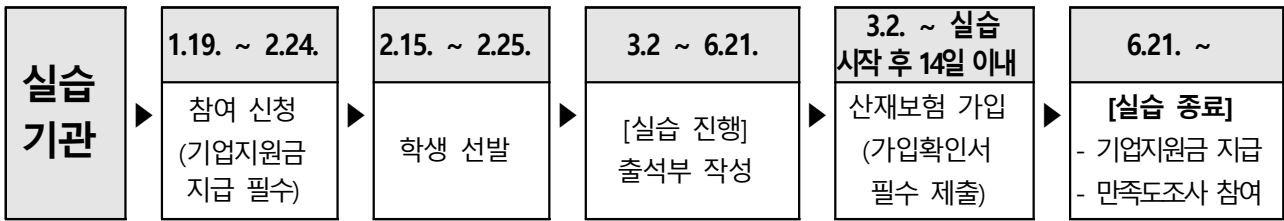
- 가. 실습기간: 2021. 3. 2.(화) ~ 6. 21.(월) / 기간 내 4주, 8주, 12주 이상 실습 진행  
 나. 실습 진행 및 관리: 제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intern.jeju.ac.kr>)  
 다. 참여대상

구분	내용	비고
학생	제주대학교 재학생	
실습기관	제주대학교 가족회사, 도내·외 기업체, 연구소, 기관 등	
※ 실습 운영 및 실습지원금 지급 관리 - LINC+사업단: LINC+사업 참여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- (본부)현장실습지원센터: 제주대학교 1~2학년 재학생, LINC+사업 비참여학과 재학생		

2. 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

가. 운영절차





나. 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

구 분		학점	실습기간	비 고
전공	학과(전공)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	학과별 상이함	학과별 상이함	학기제, 계절제
일반 선택	현장실습1	3	4주 이상	학기제, 계절제
	현장실습2	15	15주	학기제
	현장실습3	15	15주	학기제
	현장실습4	6	8주 이상	학기제, 계절제
	현장실습5	12	12주 이상	학기제
	현장실습6	18	20주 이상	학기제, 계절제 연계

다. 운영 일정

구 분	추진기간	주요내용
<실습기관>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	2021. 1. 19.(화) ~ 2. 7.(일)	<1차 신청 기간> -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: 실습 운영 내용 입력
	2021. 2. 7.(화) ~ 2. 24.(수)	<2차 신청 기간> -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: 실습 운영 내용 입력 - 학과추천 실습 수요조사 등록
<참여학생>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LINC+ 실습신청	2021. 2. 8.(월) ~ 2. 24.(수)	<1차 신청 기간> <b>1. 수강신청: 하영드리미 /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</b> <b>2. 실습기관 선택: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</b> 1)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 2) 실습기간 확인, 실습기관 선택
	2021. 3. 2.(화) ~ 3. 22.(월) *복학 신청 및 허가기간	<2차 신청 기간> * 복학 신청자 대상 추가 기간 운영 1. 수강신청: 하영드리미 /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2. 실습기관 선택: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1)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 2) 실습기간 확인, 실습기관 선택
실습기관-참여학생 매칭	2021 2. 15.(월) ~ 2. 25.(목)	-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관 확정 - 실습생 실습기간 확정 * 2차 신청기간 학생의 경우 별도의 매칭 기간 운영
참여학생 명단 (매칭명단) 안내	2021. 2. 25.(목) ~ 2. 26.(금)	- 참여학생 소속 학과에 안내 · 전공 일치 여부 확인

구 분	추진기간	주요내용
오리엔테이션	2021. 2. 15.(월) ~ 3. 22.(월)	- 참여 학생 기본소양 교육 및 행정사항 안내 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- 안전교육 및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- 온라인 또는 개별 사전 교육 실시
현장실습학기제 진행	2021. 3. 2.(화) ~ 6. 21.(월)	- 최종 협의 된 실습기간에 따라 실습 진행 - 4주, 8주, 12주 이상 실습 진행
현장 방문지도	2021. 3. 2.(화) ~ 6. 21.(월)	- 현장실습생 현장지도 - 현장실습기관 애로사항 확인 - 취업 연계
만족도 조사	2021. 3. 29.(월) ~ 6. 27.(일)	-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실습 만족도조사 실시
실습종료	2021. 3. 29.(월) ~ 6. 21.(월)	- 실습생 학점 취득 - 실습지원금 지원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

### 3. 현장실습 실습지원금 지원

#### 가. 실습지원비 지급 내용

지급기관	지급 금액	내 용
LINC+	800,000원 / 4주	- 4주(20일) 단위로 지급하며, 취업 또는 상해 등으로 조기 종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- 12주 이상 참여학생의 경우, 일할(40,000원/일) 지급
실습기관	실습기관 별도 기준	- 참여학생에 대해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- 지급방법(실습기관 선택): 발전기금 장학금으로 출연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

※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중단/취소하거나 기타 재난 상황,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실습 일정  
변경으로 실습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
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실습지원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

#### 나. LINC+사업단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내용

구 분			지원내용	비 고
참여 학생	도 내	실습비	- 실습일수 × 40,000원	LINC+기준
		실습비	- 실습일수 × 40,000원	LINC+기준
	도 외	숙박비	- 10,000원/1일 × 실습일수 - 당일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지원	
		교통비	- 실습 참여학생 왕복 항공료 외 교통비 실비 지원	150,000원 이내 지원
	상해보험가입		- 실습기간 동안 상해보험 가입	
방문지도 출장비			- 실습 방문지도, 실습 업체 관리 및 발굴 출장비 - 관내 출장(제주시): 일비 10,000원(4시간 이상 20,000원)	공무원 여비규정

구분	지원내용	비고
	- 관외 출장(서귀포시): 일비, 식비 지원 - 도외 출장: 출장비 지급	에 따름
※ 학생지원: 실습지원금은 4주(20일)단위로 지원하며, 특별한 사유로 실습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LINC+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일할 지원		
※ 방문지도: 장기현장실습 학생의 경우 월 1회 이상 출장비 지급 가능함		

다. 기타 사항

- 1)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,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며 실습지원금을 지급함
  -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6조 2항
  -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

#### 4. 현장실습학기제 유의사항

가. 참여대상별 의무사항

구분	의무사항
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의 전공 관련 분야의 실습기관에서만 실습 진행 가능</li> <li>- 실습 진행 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(사전 교육) 참여</li> <li>- 실습기업(관)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</li> <li>-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업(관)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li> <li>-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한다.</li> <li>- 현장실습이 완료되었을 때 실습 최종보고서와 주간보고서,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실습 종료 7일 이내에 소속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/ul>
실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가입 증명서 제출</li> <li>· 고용노동부고시 개정: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(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)</li> <li>· 시행일(2018. 9. 11.) 이후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대학생까지 확대</li> <li>· 가입방법: 근로기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'근로자 고용신고서' 제출</li> <li>· 미가입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있음</li> <li>-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</li> <li>** 비영리법인/단체 인 경우 실습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</li> <li>- 기본사항 안내 및 안전 교육, 인권 보호</li> <li>- 현장실습 참여 학생 관리 및 학생 출석부 등록, 학생평가서 작성</li> <li>- 실습생의 적합한 부서 배치 및 실무 교육</li> </ul>

나. 현장실습 운영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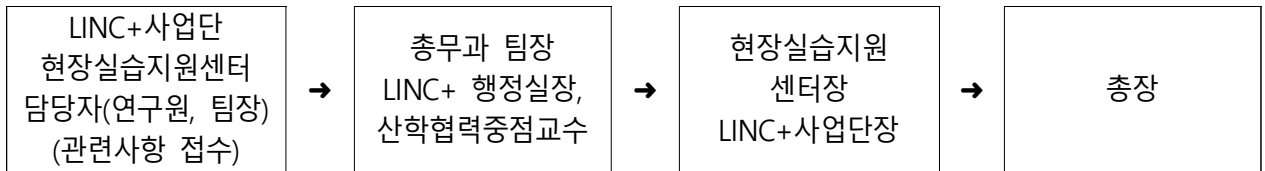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
실습기관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한다.</li> <li>- 학생의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.</li> <li>- 실습기관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·기술·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실습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</li> </ul>

구분	내 용
현장실습 운영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~8시간, 연속 4주 이상 운영하며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li> <li>-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</li> <li>-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실습기관에서 결정한다.</li> <li>- 학생이 조기 취업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, 현장실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</li> </ul>

## 5.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습 업무 조치

### 가. 보고 체계

- 1) 코로나19 관련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학 관련부서 및 학과(또는 지도교수)에 알림
- 2) 관련부서 및 대학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



### 나. 행정조치

- 1) 현장실습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 기업 실습 즉시 중단 및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실습생 모니터링
- 2) 실습 참여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, 즉시 실습을 중단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
- 3)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, sms(문자서비스)를 활용하여 발생 상황 안내
- 4) 기타 세부사항은 '(교육부)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' 지침에 따름

### 다. 학점 인정

#### 1) 재택현장실습 진행

-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, 일정한 요건\* 하에서 재택현장실습 허용
- 해당학기 현장실습 기간의 1/4기간 동안은 재택현장실습 운영 가능

\* (재택현장실습 인정요건)

- ① 국가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응기준이 필요할 때
  - ② 실습기관이 재택현장실습을 학교에 요청하고 구체적인 운영 및 학생 관리방법 (재택현장실습 신청서)을 학교에 제출
- 2) 현장실습의 5분의 4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과에 학점 처리 요청
  - 3) 5분의 4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 대체 교과 개설 및 교과목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이수(U)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  
⇒ 수강신청 교과목 환불기간이 이후에는 학사과에 증빙을 첨부하여 공문을 통해 수강신청 취소 또는 변경 협조 요청

라. 비대면 방문점검 가능

- 1) 대학(교원, 현장실습지원센터, 전담부서 등)에서는 전염병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지도/점검을 원격으로 실시 가능함
- 2) 현장실습 방문지도/점검을 원격으로 실시할 경우 원격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증빙자료(사진 등)를 통해 실시 내역을 입증해야 함  
⇒ 방문지도보고서 작성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

마. 지원금 지급

- 1)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될 경우(감염 또는 자가격리 등) 실습한 기간 동안 일할 계산 (1일 40,000원)하여 지원금 지급함
- 2)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에 대한 조치로 인한 실습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, 출석을 인정(최대 4일/4주 기준)하며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 지원금을 지원함

6. 문의: LINC+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64-754-3125, 4416